농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8582

발의연월일: 2022. 11. 30.

발 의 자:이개호·한병도·이원택

이병훈 • 어기구 • 전혜숙

위성곤 · 김두관 · 고영인

신정훈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리적표시제는 지역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의 품질향상을 통하여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는 한편,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 입법목적임. 그러나 수산가공품의 경우 농산가공품과 달리 바다라는 생산지와 양륙지의 지리적·인적 특성이 어우러져 특정 품질 특성을 나타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등으로 어획지역이 변화하고 있음에도원료의 생산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지리적표시의 정의에서 농산물 또는 농산가공품과 동일하게 적용받고 있음.

그 결과, 수산물의 지리적 표시제는 양식산 어류, 해조류, 패류 및 이들 원료의 2차 가공품에 한정되며 어획어류 등 고부가가치 수산가 공품은 등록을 못하는 실정임. 이에, 어업허가에 따라 어획된 국내산 어류를 주원료로 하는 수산가공품은 생산(어획해역)지역에 관계없이 가공지역의 지리적·인적 특성만으로 지리적표시 등록이 가능하도록

정의를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8호).

법률 제 호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8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라 어획된 어류를 원료로 하는 경우에 도 특정·대상 지역에서 생산된 것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
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지리적표시"란 농수산물 또는	8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	
의 명성·품질, 그 밖의 특징	
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해당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	
공품이 그 특정 지역에서 생	
산ㆍ제조 및 가공되었음을 나	
타내는 표시를 말한다. <후단	<u>이 경우 수산업법 제</u>
<u>신설></u>	41조에 따라 어획된 어류를 원
	료로 하는 경우에도 특정・대
	상 지역에서 생산된 것으로 한
	<u>다.</u>
9. ~ 14. (생 략)	9. ~ 1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